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13-177호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7. 26.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직원 수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2.8.1)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22.8.19.~'22.11.21.)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피심인은 관할 의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수요 조사'와 관련하여 '22. 8. 30 기준 1,206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일	건수(명)

- * 주민번호 수집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및 동 법 시행령 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관할 요양기관이 이메일로 제출한 예방접종 수요조사 명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규모 및 항목

27개 요양기관 1,206명(종사자 503명, 입소자 703명)의 요양 시설명, 요양기관 코드, 촉탁병원, 촉탁의 방문접종 예정일, 성명, 대상,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접종유무, 미실시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경과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2022.	7. 29	B 담당자의 항의를 통해 유출사실을 인지		
	8. 1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 유출 신고			
	8. 2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 (1차, SMS)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 게시		
	8. 3	정보주체 496명* 대상 유출사실 통지 (2차, 서면) *휴대전화번호가 중복된 번호(요양기관의 관리자 휴대전화)로 기재된 요양기관 입소자를 개별 방문하여 서면 유출 안내문을 전달함		
	8. 4	27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 삭제 확인		
	8.17~30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강화 교육 실시		

3) 유출경위

피심인 소속 직원 A는 '22.07.24. 11:21 27개 에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작성 및 회신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이 제출한 의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하나의 엑셀 파일 형태로 취합하였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 서식을 이메일에 첨부

직원 A는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합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명단*(엑셀파일)을 27개 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나 이메일 본문에 해당 비밀번호를 기재함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접종관련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명단을 27개 에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별로 접종 대상자 명단을 구분하지 않았고, 붙임 엑셀파일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2. 28.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엑셀파일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메일 본문에기재한 행위는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보호법 제24조제3항,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224호, 2022.10.20.,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1의3]은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 및 유출 주민등록번호 규모에 따라 산정기준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므로, '일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적용한다.

< [별표 1의3] 2. 가 >

위반 정도	산정 기준액	비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 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 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 등'이라 한다)된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일반 위반행위	1억 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나.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1차 조정)는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1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1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1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의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4점에 해당하여 <1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5,000만 원을 감경한다.

< 1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1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3이상 2.5미만	+100분의 35
2.1이상 2.3미만	+100분의 20
1.9이상 2.1미만	-
1.7이상 1.9미만	-100분의 20
1.5이상 1.7미만	-100분의 35
1.5미만	-100분의 50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점수 고려사항 비중		<u>점수</u> 비중	3점	2점	1점
안 전 성 확 보 조 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0.2	호의 조치를 모두 하지 아니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한 가지를 하지 아니 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한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암호화	0.2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화알 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은 경우	
	보안 프로그램	0.2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접속기록의 보관 등	0.2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 등록번호를 보관하는 물리적 보	보관 및 위조·변조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번호에 대한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물리적 안전	3점 또는 2점에 해당
피해 방지 후속 조치 등		0.2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조치 사항 중 두 가지 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

다.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2차 조정)는 "2차 조정금액은 1차 조정된 금액에 <2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2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1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2,500만 원을 감경한다.

< 2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1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1이상 2.5미만	+100분의 25
1.7이상 2.1미만	-
1.3이상 1.7미만	-100분의 25
1.3미만	-100분의 50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고 고려사항	<u> </u>	3점	2점	1점
위반기간	0.2	위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	0.2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사협조	0.2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자료 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자료 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차 피해	0.2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0.2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원교육을 하거나 표창을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현저히 큰 경우

^{*} 유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강화 교육을 수차례 실시('22.8.17~30)함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부과과징금의 결정)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속한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제1항),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담당 직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출된 해당 엑셀 파일은 보호법이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징금 면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유출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로 유출된 점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1,250만 원을 감경한다.

※ (추가 고려사항) 사고 발생이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후속조치한 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 실태를 자체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

마. 최종 과징금

피심인이 보호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차, 2차,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통하여 최종 1,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준금액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 과징금 결정	최종 과징금
1억원	5,000만 원	2,500만 원	1,250만 원	
일반 위반행위 ※ 10만건 미만	1차 산정점수 1.4점 ⇒ 50%(5,000만 원) 감경	2차 산정점수 1.2점 ⇒ 50%(2,500만 원) 감경	2차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 ⇒ 50%(1,250만 원) 감경	1,250만 원

2. 과태료 미부과

보호법 제76조는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 하나, 보호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3년 7월 26일

- 위원장 고학수 (서명)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